

#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 안내

## 1 대상자 조회

- (확인방법) 장기요양정보시스템 > 기타 > 돌봄인력 한시적지원에서 지원 대상자 조회
- (구축조건) '22.3.22.기준 급여비용 청구 및 인력신고자료 기반 구축
  - ① (대상자) '22.1월 급여제공으로 청구이력이 있으면서 사업공고일('22.3.14.)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장기요양요원
    - (제외)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
    -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중인 장기요양요원
  - ② (대상여부) 사업공고일 현재 재직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
    - (대상) 지원금 신청 가능자
    - (비대상) '22.3.14.기준 퇴직, 자격정지, 직종변경 등으로 지원 제외

※ 근무종료일과 퇴직일 차이는?

- (근무종료일) 종사자의 마지막 근무일로 서비스 제공 가능일
- (퇴직일) 근무종료일+1일로 서비스 제공 불가능
- (예시) 인력신고 현황에 퇴직일이 '22.3.14일이면 지원 대상? N  
인력신고 현황에 퇴직일이 '22.3.15일이면 지원 대상? Y

※ 인력신고현황 확인은?

- 장기요양정보시스템>요양자원>장기요양기관관리>장기요양기관 현황조회

- ③ '22. 3.14.기준 재직 중인 장기요양기관별 각각 구축
  - 장기요양요원의 소속 기관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도록 자료 구축, 지급 결정 시 지원금 신청 순으로 1회만 지급
  - ※ 동일기관에 겸직 등 직종을 달리하여 재직하는 경우 요양보호사>간호(조무)사>물리(작업)치료사>사회복지사 순으로 1건만 자료 구축

## 2

### 지원금 지급 대상

- (지원대상) '22. 1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\*
  - (자격기준) 사업공고일('22.3.14.) 현재 장기요양요원으로 재직 중인자
    - \*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(조무)사, 물리(작업)치료사, 치과위생사
  - (제외대상)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급여비용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

#### < 한시지원금 신청대상 예시 >

구분	'21년 12월	'22년 1월	'22년 2월	'22년 3월 14일	지원대상
서비스 제공내역 (○, ×)	○	○	○	재직	지원대상
	○	×	○	재직	대상아님
	×	○	×	재직	지원대상
	×	×	○	재직	대상아님

## 3

### 지원금 신청 · 지급

- (신청방법)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

▶ (장기요양요원)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서(서식1) 작성  
 ※ (유의사항) 신청대상자 본인계좌로만 신청 가능



▶ (장기요양기관) 지원대상자 재직여부 등 확인 후 신청서 포털 등록 및 전송  
 ※ (재직확인) '22.3.14.기준 장기요양요원으로 재직 여부 기관 대표자 확인  
 ※ (신청서) 한시지원금 신청서는 장기요양기관 자체 보관(5년)

- (지급금액) 장기요양요원 1인당 20만원 일시지급

※ 2개 이상 기관에 재직하는 지원대상자도 본인계좌로 1회만 지급

## 4

### 신청자격 확인

- (신청서 확인) 개인정보 제공 동의, 계좌번호, 연락처 등 기재사항 확인
  - ※ 한시지원금 신청계좌는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신청 가능
- (재직 확인) 재직여부 확인 시 지원금 신청인의 퇴직 및 직종변경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
  - (재직자)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 병가 또는 휴직중인 직원 포함
  - (재직자가 아닌 경우)

- 퇴직자이나 신고 누락(지연)으로 지원대상자로 발체된 경우
- 직종 변경 등으로 사업공고일 현재 장기요양요원이 아닌 경우
  - ※(예시) '22.1월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으나 '22.3.14.현재 시설장으로 변경된 경우
- (반송건 확인) 신청일로부터 2일 경과 후 공단 접수 상태 확인

## 5 이의신청 안내

- (신청대상)
  - 1) 인력 신고 또는 급여비용 청구 지연(누락)으로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
    - ① '22.1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직접 돌봄업무 종사자
    - ② '22.3월 사업공고일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장기요양요원
  - 2) 지원대상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
  - 3) 외국인 종사자의 예금통장 예금주 성명이 영문인 경우
- (신청인) 장기요양요원
- (증빙자료)
  - 1) 인력 신고 또는 급여비용 청구 지연으로 구축 제외된 자
    - ① 이의신청서(개인정보 동의, 재직여부 및 대표자 확인 필수)
    - ② 재직확인서류(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 등 직종, 근무기간 확인가능서류)
    - ③ '22. 1월 근무이력(급여제공기록지,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 등)
    - ④ 통장사본
  - 2) 대상으로 구축 되었으나 본인명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없는 자
    - ① 이의신청서
    - ② 위임장
    - ③ 신분증(위임자, 위임 받는자)
    - ④ 통장사본(위임 받는자)
- (처리기한)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
- (결과통보)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
- (접수처) 공단 본부 팩스 제출(033-749-9662)
- (문의처) 1577-1000